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공사현장 장마철 피해 예방 특정감사 -

2020.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경산시 @@과	경산시 000 000000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훈계2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문 책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경산시 000 000000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경산시 @@과			훈계	
					훈계	

3. 처분요구일람표

1) 경산시 000 000000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2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2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경 산 시 @@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경산시 000 000000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 @@@@팀에서는 000 000000 건설공사를 [표]와 같이 (주)##### 대표 ***와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 감사관실에서는 ‘공사현장 특정감사 (장마철 피해 예방) 계획 통보(감사관-10609, 2020. 7. 21)’ 후 현장을 확인(2020. 7. 24)한 사실이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기타			
000 0000000 건립공사	연면적 2,267㎡ (지하1/지상3)	4,150	3,165	978	7	2019.11.11.~ 2020.10.24	(주)##### ***	

「건설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20조, 제30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① 자격등록취소 ②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건설공사 시공 및 품질관리는 장·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목적물의 성능보장과 내구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경산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추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옥상 슬라브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으로 빗물이 스며들거나, 공사현장 안으로 빠져 들어온 빗물이 고여 아래층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 감사관실 현장 점검 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그림] 건축물 누수현황

	
3층	2층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건축물의 성능보장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균열보수 등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공사감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③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